서 울 특 별 시

우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3707-8233~4 / 전송 3707-8249
처리부서 : 주택재개발과(별관 2동 2층) 과장 배경동 담당사무관 이광석 담당 손경철

문서번호 주제58531- 3561
시행일자 1999. 12. 8. ( )
공개여부 (공개)
(경 유) (제 1 안)
수 신 내부결재
참 조

보존기간	년	시 장
공개여부	공개	
부 시 장		
국 장	전결	
과 장		법무담당관(고시안심사) 심사필
기 안 자	손경철	담당사무관 이 / 협조
심 사 자		심 사 일 1999. 12. .

제 목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

1. 구로 도게58533-2888호(99.6.10), 도게58531-4624호(99.9.6), 도게58531-4625호(99.9.6) 및 도게58530-5044호(99.9.21)와 관련입니다.

2.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구로구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와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에 대하여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되,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내 20년이하의 건물들은 존치함을 조건으로 지구지정 하고자 합니다.

가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조서

지 구 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가리봉2동제1지구	구로구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	9,127	신규지정
구로6동제1지구	구로구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	2,879	신규지정

첨 부 1. 고시(안) 1부.
2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도서 1부.
3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1부. 끝.

(제 2 안)

수 신 행정자치부장관

참 조 법무담당관

제 목 관보게재 의뢰

1. 우리시 구로구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 시

나. 게재건명 :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고시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

첨 부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전결 주 택 국 장 양 갑

(제 3 안)

수 신 건설교통부장관

참 조 주거환경과장

제 목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고시 보고

1. 우리시 구로구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와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에 대하여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 규정에 따라 고시하였기에 보고합니다.

첨 부 1. 고시문 1부.

2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도서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전결 주 택 국 장 양 갑

(제 4 안)

수 신 구로구청장

참 조 도시개발과장

제 목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고시 통보

1. 구로 도개58533-2888호(99.6.10), 도개58531-4624호(99.9.6), 도개58531-4625호(99.9.6) 및 도개58530-5044호(99.9.21)와 관련입니다.

2. 귀구 관내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와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에 대하여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통보하니,

3. 관계도서를 해당부서와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처리 및 귀구의 지구지정 신청도서상의 기재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되,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내 20년이하의 건물들은 존치함을 조건으로 지구지정하니 별첨의 관련부서의 협의사항과 함께 향후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시 반영토록 조치하기 바람.

첨 부 1. 고시문 1부.

2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도서 1부.

3. 가리봉2동1(도시계획과, 재정경제부, 서울지방국토관리청) 및 구로6동1(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, 도로계획과, 재정경제부, 서울지방국토관리청)지구 관련부서 협의회신 공문서 사본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전결 주 택 국 장 양 갑

(제 5 안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고시 통보

1. 우리시 동작구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고시하였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1. 고시문 1부.

2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도서 1부. 끝.

주 택 재 개 발 과 장

수신처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, 재산관리과장

최심사	1999 12 8	제 413호
담당자	법제심사담당자부국	법무담당관
이동부	전오	구일성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9 나14호

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와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에 대하여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1999년 12월 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고시(안)

가.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결정조서

지 구 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가리봉2동제1지구	구로구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	9,127	신규지정
구로6동제1지구	구로구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	2,879	신규지정

나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도면 : 생략

※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(전화 : 3707-8233), 구로구 도시개발과(전화 : 860-2384) 및 관할동사무소(전화 : 859-5561, 839- 8431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